

# 수능 부정행위 예방 관련 안내문

수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,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 및 「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」(교육부 훈령)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, 더하여 아래 ①~⑤유형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도 제한됩니다.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"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"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□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조치

부정 행위 유형	제재
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	당해 시험 무효, 치년도 수능 응시자격 정지
②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,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	당해 시험 무효, 치년도 수능 응시자격 정지
③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	당해 시험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(미제출시 부정행위로 간주)
④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	1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,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·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의무적으로 올려놓도록 하고, 감독관이 시계를 점검하도록 함
⑤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	당해 시험 무효
⑥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	당해 시험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(미제출시 부정행위로 간주)
⑦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	1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,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·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의무적으로 올려놓도록 하고, 감독관이 시계를 점검하도록 함
⑧ 김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	당해 시험 무효
⑨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	당해 시험 무효
⑩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	당해 시험 무효
⑪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 행위로 판단한 경우	당해 시험 무효

\* 파란색 부분은 2022학년도 수능 이후 개정된 규정

## □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휴대 가능 물품의 종류 <반입 금지를: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>

■ 휴대전화, 스마트기기(스마트워치 등), 디지털 카메라, 전자사전, MP3, 태블릿PC, 키메라체, 전자계산기, 라디오,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, 결제·통신(블루투스 등) 기능 또는

전자식 화면표시기(LCD, LED 등)가 있는 시계, 전자담배, 통신(블루투스)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

<웨어러블 기기 예시 >



### 〈휴대 가능 물품: 쉬는시간 및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〉

■ 신분증, 수험표,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, 수정테이프(흰색), 흑색연필, 지우개, 샤프펜(혹색, 0.5mm), 결제통신(블루투스 등) 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(LCD, LED 등)가 모두 없는 시계, 분침(초침)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, 마스크(감독관 사전 확인) 등

\* 수능 시험실 휴대 가능 시계는 시침, 분침(초침)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결제·통신(블루투스 등) 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(LCD, LED 등)가 없는 시계임  
- 시침, 분침(초침)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 가능하나 결제통신(블루투스 등)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(LCD, LED 등)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

\* 흑색 연필,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

\* 1교시 시작 전 시험실에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사포를 일괄 지급하고,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하여 시험 중 원하는 수험생에게 제공

\* 휴대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물품의 경우에는 매 교시 김독관이 당해 물품을 통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휴대 가능 여부 판단(예: 풀보기, 귀마개, 방석 등)

## <시험 중 허대 가능 물품 외 물품: 쉬는 시간 허대 가능이나 시험 중

### 후대는 불가능한 물품>

#### 시험 중 허대 가능 물품 외 물품(예시)

- 적발 시 입수되는 물품: 투명종이(일명 기름종이), 연습장, 개인사파, 예비마킹용 플라스펜 블펜 등
- **직발 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: 교과서, 참고서, 기출문제집 등**

※ 발견 즉시 암수 조치하고, 암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처리할 수 있으며,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적발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

※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은 시험 시작 전 모두 가방에 넣어 가방을 시험실 앞으로 제출하도록 하고, 시험시간 중에는 접촉하지 못하게 함 경우에는 부정행위 처리할 수 있으며,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직발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

### 2024학년도 수능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(탐구 영역 2과목 선택 수험생)

1	<b>4교시 탐구 영역(사회·과학·직업) 문제지 표지에 제시된 필자 확인문구를 답변지의 필자확인란에 정직으로 작성</b>
2	4교시 탐구 영역(사회·과학·직업) 제1선택 과목 문제지와 제2선택 과목 문제지 빼냄  ↓
3	문제지 상단에 성명, 수험번호, 응시 순서(1 또는 2) 기재  ↓
4	제1선택 과목 문제지 한 부만 책상 위에 올려두고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문제지(표지 포함)는 반으로 접어 제2선택 과목 문제지와 함께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음.  ↓
5	문제가 보이지 않게 답안지를 제1선택 과목 문제지 위에 올려놓고, 본령이 유통될 때까지 조용히 대기

#### □ 부정행위 기준(훈령 제7조제7호)

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

◆ 본인 선택과목의 순서를 바꿔서 보는 경우 또는 본인 선택과목을 동시에 보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며, 2과목 응시의 경우에만 적용(1과목 응시의 경우는 규정 미 적용)

#### □ 부정행위 사례

- ◆ A, B, C, … H, 총 8개 과목 중 2과목을 응시하고, 본인 선택과목이 A(1선택), B(2선택)인 경우

- 2과목을 응시하는 수험생 중

구분	사례 1	사례 2	사례 3	사례 4	사례 5
1선택과목시간	A	B	C	A	C
2선택과목시간	B	-	B	C	D
비고		부정행위			

※ 본인 선택과목이 아닌 문제지를 보는 경우(사례3~5), 해당 문제지 회수문제지 교체 불가)  
② 2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에 올려두고 보는 경우

구분	사례 1	사례 2	사례 3	사례 4	사례 5	사례 6	사례 7
1선택과목시간	A·B	B·C	B	A	A	A·C	C·D
2선택과목시간	-	-	-	B·C	C·D	B	B
비고	부정행위	부정행위	부정행위				

※ 본인 선택과목이 아닌 문제지를 보는 경우(사례4~7), 해당 문제지 회수문제지 교체 불가)

#### ○ 1과목만 응시의 경우

- 본인 선택과목이 아닌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가 아니며, 해당 문제지 회수(문제지 교체 불가)

## 참고 4교시 부정행위 사례